

수수료 및 검사료 등(제38조제1항 관련)

구 분	금 액	비 고
1. 제조업의 등록신청	30,000원	수입증지
2. 제조업의 등록증 재발급신청	10,000원	수입증지
3. 사료성분등록신청 및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신청	품목당 5,000원	수입증지
4. 사료 검사 및 사료 의 재검사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 사료검사에 관한 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.	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
5. 자가품질검사	사료시험검사기관의 자 체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성분별 자가품질검사로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의 성분별 수수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.	현금